

비전임교원 임용 제출서류에 관한 지침

제정 2019. 1. 1

개정 2026. 3. 1

1. 목 적

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비전임교원 인사운영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전임교원 임용 시 제출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신규임용 시 제출서류

가. 석학·특임·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·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임용 추천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학과장(부속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) 추천서(개정: 2026.3.1.)
- (2) 학과인사위원회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 회의록
- (3) 활용계획서 및 급여재원내역
- (4)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
- (5) 활용계획 세부내용(석학교수에 한함)
- (6) 원소속기관 겸직 동의서(석학, 방문교수에 한함)
- (7) 이력서(논문 및 저서목록 포함)
- (8) 최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- (9) 최종학위증명서

나. 겸직교수 신규임용 추천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학과장(부속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) 추천서(개정: 2026.3.1.)
- (2) 학과인사위원회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 회의록
- (3) 활용계획서
- (4)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
- (5) 원소속기관 겸직 동의서

- (6) 이력서(논문 및 저서목록 포함)
- (7) 최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- (8) 최종학위증명서
- (9) 원소속 기관 재직 중 교육 및 연구활동 실적에 대한 자료

3. 승진/재임용 시 제출서류

가. 석학·특임·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·산학협력전담교수 재임용 추천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학과장(부속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) 추천서(개정: 2026.3.1.)
- (2) 학과인사위원회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 회의록
- (3) 활용계획서 및 급여재원내역
- (4)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
- (5) 활용계획 세부내용(석학교수에 한함)
- (6) 원소속기관 검직 동의서(석학, 방문교수에 한함)
- (7) 승진/재임용 평가의견서
- (8) 대상자 업적요약표
- (9) 세부업적 및 실적
- (10) 이력서(요약본)

나. 검직교수의 재임용 추천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학과장(부속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) 추천서(개정: 2026.3.1.)
- (2) 학과인사위원회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 회의록
- (3) 활용계획서
- (4)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
- (5) 원소속기관 검직 동의서
- (6) 이력서(요약본)

부 칙

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